

July 20, 2021

중국 안전생산법 개정

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1. 6. 10. <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> 개정안을 통과하였습니다(이하 “개정 <안전생산법>”). 통과 확정된 새로운 <안전생산법>은 2021. 9. 1.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
<안전생산법>은 2002년 처음 공포 및 시행되었고 2009년, 2014년 2차례 개정을 거쳤습니다. 본 개정 법률은 과거의 개정 법률에 비해 수정된 내용이 훨씬 많으며, 새로 도입된 제도들도 많습니다. 그러므로 중국에서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 개정 <안전생산법>의 주요 내용을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.

아래에서는 <안전생산법>의 주요 개정 내용과 관련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.

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의 뉴스레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,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권 대 식 변호사

T +86-10-5879-3080

E daeshik.kwon@bkl.co.kr

조 우 송 외국변호사

T +86-10-5879-3080

E yusong.zhao@bkl.co.kr

김 호 연 외국변호사

T +86-10-5879-3080

E haoran.jin@bkl.co.kr

1.<안전생산법>의 주요 개정내용

(1) 생산경영업체의 내부 제도 정비 책임 확대

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업체는 <안전생산법>의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규장 제도, 안전생산책임제도, 생산안전사고위험 점검 및 관리제도 등 회사 내부 제도를 제정하고 시행해야 합니다.

상기 제도 외에, 개정 <안전생산법>에서는 새롭게 안전리스크등급관리제도(安全风险分级管控制度), 생산안전사고위험 조사처리제도(生产安全事故隐患排查治理制度)를 제정 및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(<안전생산법> 제4조, 제21조).

1 총 41개 조항이 수정 또는 추가되었습니다.

(2) <안전생산법>의 적용 분야 확대

개정 <안전생산법>에서는 통상적인 생산 분야 외에도 플랫폼 경제 등 신규 업종 및 요식 업종 등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은 안전생산 관련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
- ✓ 플랫폼 경제 등 신규 업종 분야의 생산경영업체는 해당 업종, 분야의 특징에 따라 전원안전생산책임제(全员安全生产责任制)를 제정 및 시행해야 하고, 종사인원의 안전생산교육을 강화하고 이 법 및 기타 법률, 법규에서 규정한 안전생산의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(<안전생산법> 제4조).
- ✓ 요식업 등 업종의 생산경영업체는 가스 사용 시, 가연성 기체 경보(报警)장치를 설치하고 해당 경보장치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(<안전생산법> 제36조).

(3) 안전생산 공익소송

개정 <안전생산법>에서는 안전생산 위법행위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를 초래하는 경우, 검찰원은 민사소송법, 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(<안전생산법> 제74조).

따라서 향후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업체가 <안전생산법> 등에 반하여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, 직접적인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검찰원의 소송제기에 따라 공익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.²

(4) 처벌 강도의 강화

개정 <안전생산법>은 <안전생산법> 위반 시 처벌 강도를 대폭 높였습니다. 예컨대, 과거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생산경영업체는 사고 등급에 따라 30만 위안 내지 2,000만 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지만, 개정 <안전생산법>에서는 30만 위안 내지 1억 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참고로 2021. 3. 1.부터 시행된 <중화인민공화국 형법수정안(11)>에서는 ‘위험작업죄(危险作业罪)³’가 추가되었으며, 최근인 6월 위험작업죄에 따라 형사처벌을 내린 첫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.

2 실제로 중국에서는 환경 영역 등에서 공익소송 제도가 이미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.

3 <형법> 제134조의 1: [위험작업죄] 생산, 작업 중에서 안전관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상황 중 하나의 상황이 존재하며 중대한 사망, 부상(伤亡) 사고 또는 기타 엄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, 1년 이하의 유기징역, 구류(拘役) 또는 단속(管制) 처벌을 내릴 수 있다.

- (1) 안전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CCTV, 경보, 방호, 구조 설비, 시설을 끄거나(关闭) 파괴하거나, 관련 데이터, 정보를 수정(篡改), 은닉, 소각한 경우.
- (2) 중대한 사고위험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법에 따라 생산 중단, 시공 중단, 관련 설비, 시설, 장소 사용 중단 명령을 받거나 위험을 배제하는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 받았지만 실행하지 않은 경우.
- (3) 안전생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법에 따라 비준 또는 인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임의로 광산개발, 금속제련, 건축시공에 종사하거나, 위험물품 생산, 경영, 저장 등 고위험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.

✓ 관련 사례⁴

● **사실 관계:**
 절강성 모 기업은 해당 기업의 창고에 176개 위험화학품 가스 실린더(气瓶)을 보관하였는데, 해당 창고는 위험화학품 보관에 부합되는 안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, 해당 창고는 직원 기숙사와 인접하여 있었음.

▶ **법원 판결:**
 2021. 6. 9. 관할 법원은 해당 기업의 주요책임자 여(余)모에게 6개월 유기징역,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벌을 부과하였음.

2. 시사점

중국은 과거에 비해 안전생산사고가 많이 줄어 들었고 안전생산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는 인원수(人数)도 감소하는 추세이긴 합니다만⁵, 중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 일반의 경각심은 더욱 높아진 상태입니다. 중국 정부도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안전생산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 <안전생산법>도 이러한 배경하에 개정되었습니다.

따라서 중국에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우리 나라 기업 및 그 경영진, 관리자, 책임자는 안전생산 관련 입법 및 실무 동향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고, 사전 compliance 활동도 강화함으로써 안전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인원 및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

4 https://mp.weixin.qq.com/s?__biz=MzAxMDEwMDk2MA==&mid=2650338149&idx=1&sn=f9e4577d66ef537aefd7253d4d8e2338&scene=21#wechat_redirect

5 예컨대 2001년 중대한 또는 특별히 중대한 사고가 140건이 발생하였지만 2020년에는 16건 발생하였고, 2002년 생산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인원수(人数)는 14만여명이었지만 2020년에는 27,100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. (https://www.mem.gov.cn/xw/xwfbh/2021n5y18rxwfbh_4155/).